
**서울특별시마포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12. 04. 16

**행정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기영**

서울특별시마포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 제안경위

- 가. 제출자 : 마포구청장
- 나. 제출일자 : 2012. 04. 04
- 다. 회부일자 : 2012. 04. 05
- 라. 위원회 회부근거 :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 제19조 제1항

2. 개정이유

상위법인 「도로교통법」 일부가 개정되어 조례상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근거조항을 개정하고, 조례의 제명 등 용어를 한글맞춤법에 맞게 띄어쓰기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상의 일부 문구를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제명 「서울특별시마포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를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로 변경(안 제명)
- 나. 종전의 “「도로교통법」 제11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도로교통법」 제161조제3호에 따른 과태료”로 개정(안 제3조제8호)
- 다. 한글맞춤법에 맞게 띄어쓰기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상의 일부 문구 정비(안 전반)

4. 검토의견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도로교통법」 일부가 개정되어 조례 근거 조항을 개정하고, 조례의 제명 등 띠어쓰기와 용어를 현실에 맞게 개정 하려는 것임.

○ 본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 안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1” 을 “각 호” 로 변경하고, 같은 조 제8호의 “도로교통법 제11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를 “도로교통법 제161조제3호에 따른 과태료” 로 상위법에 맞게 인용조문을 개정하였으며,
같은 조 제14호 “기타 잡수입” 은 “그외수입” 으로 2012년도 예산 편성운영 기준 세입과목 명칭 개선에 따라 변경하였음.

○ 따라서 이번 개정 조례안은 주 · 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 징수에 관련된 상위법령인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우리구 조례를 정비 함이 타당하며, 그 밖에 조례의 제명 등 용어를 한글맞춤법에 맞게 띠어쓰기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상의 일부 표현을 정비 하는 등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하려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음.

○ 참고로 도로교통법 제161조제3호에 따른 2011년도 과태료 부과 징수 현황을 살펴보면,

우리구에서 부과한 실적은 총 146,840건 56억 2,776만 9천원이며, 징수 실적은 106,715건 38억 2,104만 1천원으로 징수율은 68%임.

※ 주 · 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 징수 현황

(단위:건/천원)

구분	부과		징수		징수율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10년	135,919	5,348,894	96,208	3,533,447	66%
2011년	146,840	5,627,769	106,715	3,821,041	68%
2012년 (2.29현재)	19,161	706,611	11,019	374,420	53%

※ 관계법령 ※

■ 도로교통법 [법률 제10790호, 2011.6.8, 일부개정, 2011.12.9 시행]

제161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제16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가 부과·징수한다.

1. 제16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제15조제3항에 따른 전용차로 통행,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차 또는 주차 규정을 위반한 경우는 제외한다)의 과태료: 지방경찰청장
2. 제160조제2항(제49조제1항제1호·제3호, 제5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2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 및 제3항(제5조, 제13조제3항, 제15조제3항, 제17조제3항, 제29조제4항·제5항,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의 과태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3. 제160조제3항(제15조제3항, 제29조제4항·제5항,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의 과태료: 시장 등 [전문개정 2011.6.8]

■ 주차장법 [법률 제10790호, 2011.6.8 타법개정, 2011.12.9 시행]

제21조의2(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설치 및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 ② 생략
- ③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설치하는 주차장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제2항제1호의 수입금 및 납부금 중 해당 구청장이 설치·관리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부금
 2. 제24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금
 3.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4.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보조금
 5. 「도로교통법」 제161조제3호에 따라 시장 등이 부과·징수한 과태료
 6. 제32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징수금
- ④ 제1항에 따른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